

1. 개정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 청구 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제도를 확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상시근로자 수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사업장으로 확대
- 월평균 소득 기준을 현행 해당 사업장의 전체상시근로자 기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제도 확대

- 사업주 가동기간은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시 근로자수 제한 폐지(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 용자 한도 상향 및 용자 기간 확대
 - 사업주당 1억원→1억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1천 5백만원
 -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14. ~ 11.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갓춘 사업장에서 퇴직한”을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를 “해당사업장에서의 월평균 소득이”로, “이하인 사업장”을 “이하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것

제8조의3제2항 중 “지원신청서를”을 “지원신청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소득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8조의6제1항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10제2항 본문 중 “1년 거치(据置) 후 2년”을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기호(-) 중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면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별지 제6조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의2, 제8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후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6, 제8조의9, 제8조의10 개정규정은 시행 후 제8조의8제1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용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퇴직한 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년 월 일	① 체불액	총액	원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원		
			퇴직급여등	원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300명 초과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사업장		

③ 사업 활동 현황	사업개시일(년 월 일), 사업정지일(년 월 일)
------------	--

사업주의 소재 파악 여부	[] 소재 파악 가능 [] 소재 파악 불가능
---------------	--------------------------------

재판상 도산의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 모름
---------------	-------------------------------

④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 여부 (신청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

위의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체불액” 란은 신청인이 대상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의 총액을 적고,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한 금액도 적습니다.
- ② “사업의 종류” 란은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적고, 그 밖에 경우에는 모두 일반산업으로 적습니다.
- ③ “사업 활동 현황” 란 중 “사업개시일” 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고, 사업정지일은 해당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정지된 날을 적습니다(해당하는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④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 여부” 란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유의사항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외의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 30명 미만	[] 30명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소득에 관한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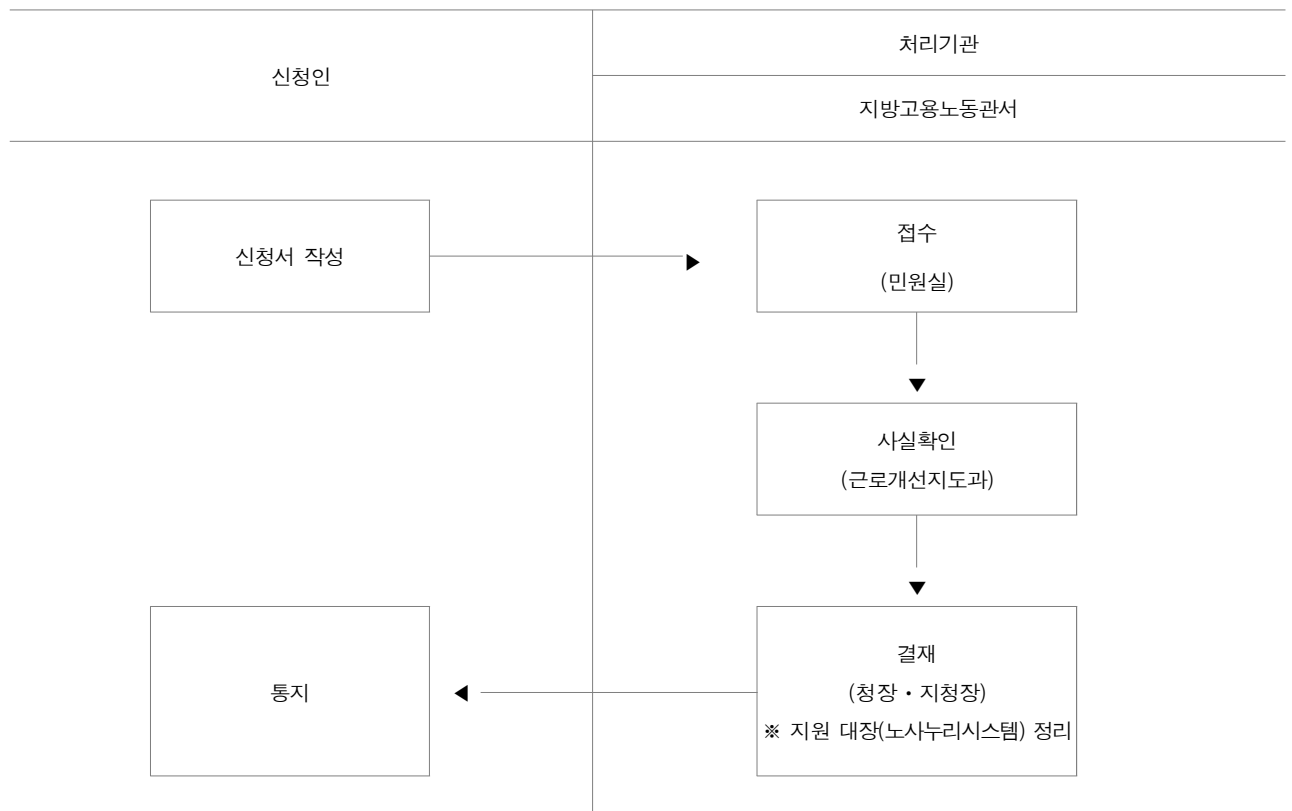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합니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 이후 대리권자의 확인 시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조사과정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앞쪽에 대표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뒤 별지 신청인 목록에 나머지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관련업무는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신청인 목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웅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확인 신청 사항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사실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직일(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 4.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	--	--

3. 체불 임금등 응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체불금액(천원)						
					계	임금		퇴직급여등		기타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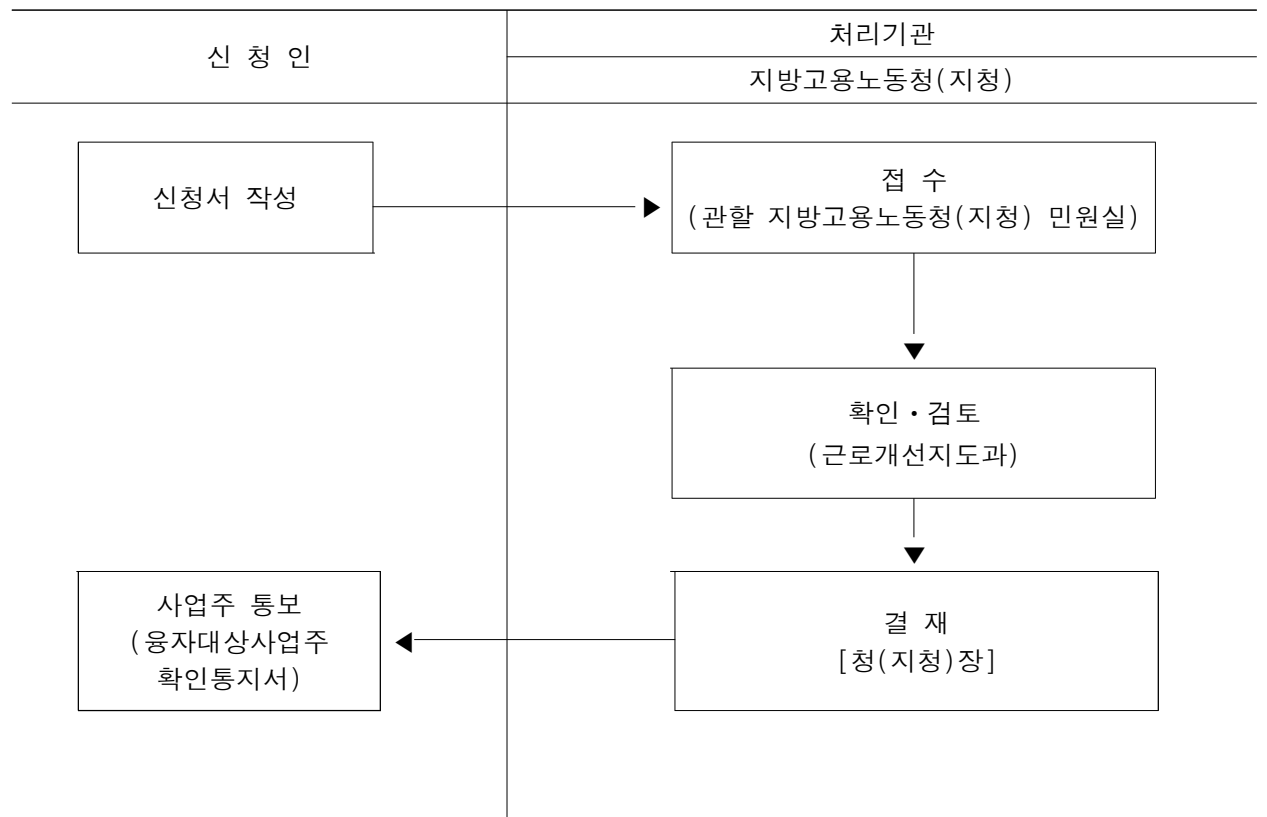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 서류 준비 안내

1. 재고량 증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3.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입니다.
4.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 등을 말합니다)를 첨부합니다.

용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업종(주산품)
	사업개시일	
	소재지 (전화번호:)	

2. 확인 신청일	년 월 일
3. 체불인원 및 체불금품 총액(천원)	체불인원 (명), 체불금품 총액 (천원)
4.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5.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체불금액(천원)						
					계	임금		퇴직급여등		기타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1. "체불인원"은 융자신청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을 요청한 근로자의 수이며, "체불금품 총액"은 이들의 체불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하는 번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재고량: 기준달(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
 - 나. 생산량: 직전 연도 월평균(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
 - 다. 매출액: 직전 연도 월평균(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 라. 매출액 또는 재고량: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또는 증가 추세
 - 마. 원자재 가격: 직전 연도 월평균(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 바. 거래대금: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사. 그 밖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 종(주 산 품)		
	사업개시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구 분	기 재 사 항
2. 용자신청인원 및 금액	()명, ()천원
3.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존재 여부	해당[] / 비해당[]
4.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5. 6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6.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체불금액	융자신청액	계좌번호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임금채불 등 사업주 용자를 신청합니다.

이	호	지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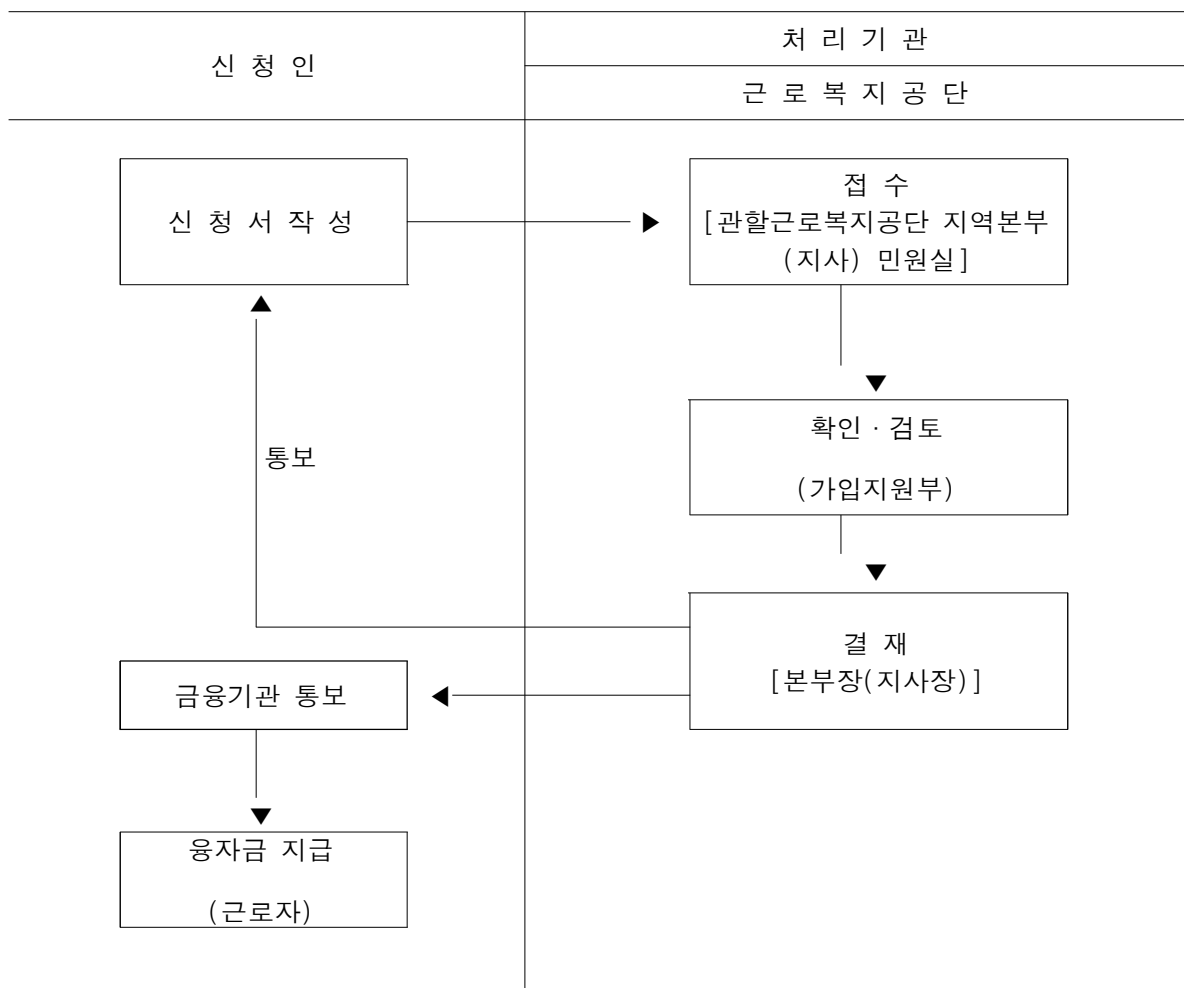
첨부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1. 사업장 개요를 기재하며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에 기초하여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4. 용자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5.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6. 확인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확인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는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 ----- ----- ----- ----- 충족하는 ----- -----.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1.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것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 ----- -----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3.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소득이----- ----- 이하일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삭 제>

퇴직한 근로자는 그 사업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의6(채불 임금등의 융자대상 사업주)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채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신청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소득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6(채불 임금등의 융자대상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
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일 것

② (생략)

제8조의9(채불 임금등 용자의 신
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용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불 임금등 용자금지
금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용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천만원으
로 한다.

제8조의10(채불 임금등 용자의 금
액과 조건) ① (생략)

② 용자받은 금액은 1년 거치
(据置) 후 2년 간 분할 상환한
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
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

-----.

1. -----

----- 6개월 -----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9(채불 임금등 용자의 신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억5천만원 -----
-----.

----- 1천500만원 -----
-----.

제8조의10(채불 임금등 용자의 금
액과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간 -----

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 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 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 ----- ----- ----- -----. ③ (현행과 같음)
--	---